

1. 예산 총칙

202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50,305,378	19,509,161
일반회계	593,374,752	17,801,243
특별회계	56,930,626	1,707,919
기타특별회계	56,930,626	1,707,919
공무원아파트특별회계	9,967,180	299,015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3,326,414	99,792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279,500	8,38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94,000	17,82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173,170	155,195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71,850	26,15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35,633	19,06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189,710	155,691
수질개선특별회계	26,873,169	806,195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4,020,000	120,600

제 2 조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26,626,649천원이며, 재해·재난 예비비 19,604,249천원을 포함한다.

제 6 조 202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5,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